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 국유재산 특례 신설〉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594호)

2021.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 국유재산 특례 신설 (안 별표 제223호)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변재일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1. 7. 20.

다. 회 부 일 : 2021.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유재산 특례 신설(안 별표 제 223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③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고 장기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방사광가속기³⁾란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⁴⁾에 따른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을 말함.

개정안은 이러한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방사광가속기”란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하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할 수 있다.

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6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특례 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개정안은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방사광가속기의 체계적인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임.

둘째, 국유재산 특례의 요건이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성 및 법인의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과 구체성이라는 특례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⁵⁾」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출연 등 예산 지원 및 세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국유재산특례를 인정할 경우 중복지원의 결과가 되는지 여부 및 특례부여가 자금지원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

5)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하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요해 보임.

넷째, 동 개정안과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례 신설을 위해서는 존속기간의 선행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최근 충청북도에 구축하기로 결정된 방사광 가속기의 경우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유부지에 국가 예산으로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하는 것이며, 방사광 가속기 운영기관은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할 예정이므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대부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사용료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법」과 다르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⁶⁾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이 감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593호)

제1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등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u><신 설></u>	별표 22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문 의 처

02)6788-5151

참고 1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개요[기획재정부]

- (목적) 산업 R&D 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지원을 위한 세계 최고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 *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20324, 과기자문위) :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 결정
- (총사업예산/기간) 10,454억원*(예비비 포함) / '21년하~'27년상(6년)
 - * 국비 8,454억원/지방비 2,000억원(전체부지 54만m²(기본부지 26만m²), 충북 오창)
 -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1.4.30) : B/C 0.78, AHP 0.724
- (사업규모) 다목적방사광가속기 1기 및 빔라인 10기 구축
 - 빔에미턴스 0.1nm·rad이하(설계 0.058), 빔에너지 4 GeV, 둘레 약 800 m
- (추진기관) 과기정통부/충북도·청주시/구축사업단(정책지정 예정)
 - (정부) 장비 구축 및 건설, 연구시설 등/(지자체) 부지 제공



- (빔라인 구축계획) 총 40기의 빔라인 중 1단계로 10기 우선 구축

< 총사업비 세부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장치비			기반시설 공사	예비비	부지 매입 등	계
	가속장치	빔라인	소계				
• 국비	3,460	1,305	4,765	3,243	446	-	8,454
• 지방비	-	-	-	-	-	2,000	2,000
총계	3,460	1,305	4,765	3,243	446	2,000	10,454

참고 2

국내 방사광가속기 현황 및 활용 성과[기획재정부]

① 국내 구축·운영현황

	주요성능	추진주체	비 고
3세대 (원형)	○ 전자가 회전시 발생 방사광 이용 ○ 에너지 : 3.0GeV(전자) ○ 빔라인 : 36기(최대 40기)	국유재산 (포항공대 위탁관리)	운영 중 (’95~)
4세대 (선형)	○ 전자가 휘 때 발생하는 X-선 이용 ○ 에너지 : 10GeV(전자) ○ 빔라인 : 3기(최대 5기) ○ 3세대에 비해 100억배 밝기		운영 중 (’17~)
4세대 (원형)	○ 전자가 회전시 발생 방사광 이용 ○ 에너지 : 4GeV(전자) ○ 빔라인 : 10기(최대 40기 이상) ○ 3세대에 비해 100배 밝기	국유재산 (기초과학 지원연 주관기관)	구축 추진 (’21~’27)

② 국내 활용 성과

○ 약 6천여명의 연구자, 1,600여 과제 지원으로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18년)

- SCI 논문수 확대, 평균 IF 상승, 일부논문 Nature/Science 게재 등 연구 성과 확대 및 성과의 질도 향상

< 최근 3년간 우수저널(NSC) >

구분	논문명	게재월
Cell	‘드로셔 단백질’ 3차원 구조 해석 연구	2016.01
Nature	3차원 그래핀 합성법 개발	2016.06
Science	페로브스카이트 BSO 태양전지 전극 연구	2017.04
Science	과냉각된 물의 결정구조 실증	2017.12
Nature	신개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박막기술‘DFA’ 개발	2019.03

○ 반도체, 소재, 바이오 분야 등 국가 핵심 산업분야를 지원

- 단백질 구조분석을 통한 신약개발*, 물질구조 규명을 통한 신소재 개발**, 반도체 불량률 개선(70%→10%) 등 산업체활용*** 탁월한 성과 창출

* 비아그라 기작원리 규명(Nature 표지, ’03), B-Z DNA 구조 규명(Nature 표지, ’05), 에이즈 바이러스 증폭 차단 단백질 구조 규명(Molecular Cell 표지, ’06) 등

** 고성능 제올라이트 개발(’06), 세계 최대 결정성 하이브리드 다공성 물질 개발(’07) 등

*** 소형 광통신 반도체소자 불량개선(’01, 삼성), 초소형 무통증 조사비늘(’05, 기계연) 등